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9
----------	------

발의연월일 : 2022. 1. 24.

발의의원 : 김정태 의원, 최상국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타법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타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
 -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 제59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u>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로 하고, “효율적인”을 “청원에 대한 효율적인에 제출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u>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2.1.13.)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